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06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	제106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
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	등록취소 등) ①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	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
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	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4호	<u>.</u>
・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	
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2
준에 미달하게 된 때 <u>&lt;단서</u>	<u>다만,</u>
<u>신설&gt;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
	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
	예외로 한다.
3. ~ 11. (생 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